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2. . . (제 회)	

해양환경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해양수산부장관)
제출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심한 바다골재 채취사업과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대한 해역이용협의 등의 업무를 보다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수행하던 바다골재 채취사업과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대한 해역이용협의 등의 업무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수행하도록 변경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해역이용협의 및 해역이용영향평가 업무 권한 위임 대상사업 조정
(안 제94조 및 안 별표 17의2 신설)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수행하던 바다골재 채취사업 및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대한 해역이용협의 및 해역이용영향평가 업무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수행하도록 함

나. 일반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 조정(안 별표15)

「어촌·어항법」에 따른 어항시설 중 계류시설이 일반해역이용협의 대상에 누락되어 있어 이를 포함시킴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기관 의견조회 예정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심사 예정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개최하여”를 “개최해”로 한다.

제10조제5항 중 “고시하여야”를 “고시해야”로 한다.

제12조제2항제3호 중 “오염부하량의 할당”을 “오염부하량(負荷量)의 할당(割當)”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요하지 아니하는”을 “필요로 하지 않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총량관리기본계획”을 “총량관리기본계획(이하 “총량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3항에 따른 총량관리기본계획(이하 “총량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총량관리시행계획”을 “총량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총량관리시행계획(이하 “총량관리시행계획”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4항에 따른 총량관리시행계획(이하 “총량관리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총량관리시행계획”으로, “반영하여야 한다”를 “반영해야 한다”로 한다.

제13조제4항 중 “인정되면”을 “인정하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청취하여야”를 “들어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보존하여야”를 “보존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이행하여야”를 “이행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관하여”를 “관해서”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제출하여야”를 각각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인정되면”을 “인정하면”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작성·보관하여야”를 “작성·보관해야”로 한다.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를 “않는 지방자치단체에게”로, “하여서는 아니”를 “해서는 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아니하면”을 “않으면”으로 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로”를 “사람으로”로 한다.

제24조제2항 전단 중 “인정되면”을 “인정하면”으로 한다.

제24조의2제2호 중 “시행하여야”를 “시행해야”로 한다.

제2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산식”을 각각 “계산식”으로 한다.

제25조의2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산식”을 각각 “계산식”으로 하고, 같은 항 본문 중 “선적 또는”을 “선적(船積) 또는”으로, “이적 또는 잔존한”을 “이적(移積) 또는 남은”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잔존한”을 “남은”으로,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매분기별”을 “매 분기”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납부하여야”를 “납부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인정되는”을 “인정하는”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균분하여”를 “균등 배분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납부하여야”를 “납부해야”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급하여야”를 “환급해야”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환급하여야”를 “환급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제32조제3항 전단 중 “분할납부에 관하여”를 “분할납부”로 한다.

제32조의2 중 “알려 주어야”를 “알려야”로 한다.

제33조제2항제1호 중 “저감대책”을 “저감(低減)대책”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조사·측정하여야”를 “조사·측정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한다.

제43조제1호나목, 다목, 같은 조 제2호가목 및 나목 중 “아니할”을 각각 “않을”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안전을 저해하거”를 “안전에 지장을 주거”로, 같은 목 부터 마목까지 중 “아니할”을 각각 “않을”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자로”를 “사람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자의”를 “사람의”로 한다.

제48조제1항제2호 중 “예인·인양조치”를 “예인(曳引)·인양(引揚)조치”로 한다.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포함하여야”를 “포함해야”로 한다.

제50조제2항 중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제51조제3항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52조제1항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인정되는”을 “인정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급하여야”를 “지급해야”로 한다.

제54조제1항 중 “납부하여야”를 “납부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과하였거”를 “부과했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환급하여야”를 “환급해야”로 한다.

제54조의3 중 “알려 주어야”를 “알려야”로 한다.

제54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제55조제4항 중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한다.

제60조의2제2항 단서 중 “가액”을 “가액(價額)”으로,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고하여야”를 “공고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공탁하여야”를 “공탁해야”로 한다.

제61조제2항 중 “실시하여야”를 “실시해야”로 한다.

제6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제64조제2항 중 “작성하여야”를 “작성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한다.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하

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66조 중 “고시하여야”를 “고시해야”로 한다.

제67조제4항제2호 중 “아니하면”을 “않으면”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아니한”을 각각 “않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69조제2항 중 “아니하면”을 “않으면”으로, “명하여야”를 “명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아니할 경우에는”을 “않을 경우에는”으로, “아니할 때”를 “않을 때”로, “명하여야”를 “명해야”로 한다.

제70조제2항제3호 중 “아니하고”를 “않고”로 한다.

제71조제1항 중 “조사하여야”를 “조사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정하여진”을 “정해진”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정하여지지 아니한”을 “정해지지 않은”으로 한다.

제73조제1항제3호 중 “차입”을 “차입(借入)”으로 한다.

제7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7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76조 단서 중 “소지인”을 “소지인(所持人)”으로 한다.

제77조제2항 중 “공고하여야”를 “공고해야”로 한다.

제78조제1항 본문 중 “기명날인하여야”를 “기명날인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7호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한다.

제79조 전단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대하여도”를 “대해서도”로 한다.

제81조제1항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8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명날인하여야”를 “기명날인해야”로 한다.

제84조제1항 중 “흠결된”을 “흠결(欠缺)된”으로 한다.

제85조제1항 전단 중 “최고”를 “최고(催告)”로 하고, 같은 항 중 “하여야”를 각각 “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할”을 “그렇지 않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하여야”를 각각 “해야”로 한다.

제86조제2항 중 “예산충척·추정대차대조표”를 “예산충척·추정재무상태표”로, “첨부하여야”를 “첨부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8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첨부하여야”를 “첨부해야”로 한다.

제88조제1항 중 “신청하여야”를 “신청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고시하여야”를 “고시해야”로 한다.

제89조제1항제2호 중 “인정되는”을 “인정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판단되는”을 “판단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7호 중 “과정에서의 적법 여부”를 각각 “과정이 적법한지”로 한다.

제9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를”을 “사람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취득한 자”를 “취득한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라목 중 “배치

· 설치 및 자재·약제”를 “배치·설치 및 자재·약제”로 한다.

제91조의2제1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신청하여야”를 “신청해야”로 한다.

제94조제2항제8호나목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1호 및 제12호 중 “(처분기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는)”을 각각 “(별표 17의2에 규정된 대상사업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시 위임”을 “다시 위임”으로 한다.

제9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포함하여야”를 “포함해야”로 한다.

제96조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별표 15 제1호의 공유 수면의 점용·사용의 대상사업란 가목1) 중 “계류시설·외곽시설·임항교통시설”을 “계류(繫留)시설·외곽시설·임항교통시설”로 하고, 같은 란 나목1) 중 “외곽시설”을 “계류시설·외곽시설”로 하며, 같은 란 다목 중 “수문”을 “수문(水門)”으로 하고, 같은 란 사목 중 “오수”를 “오수(汚水)”로 하며, 같은 란 차목 중 “「해양환경관리법」 제23조제1항”을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7조제2항”으로 한다.

별표 16 제3호 중 “「해양환경관리법」 제23조제1항”을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7조제2항”으로 한다.

별표 17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역이용협의 및 해역이용영향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94조제4항1호 및 1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처분기관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법 제84조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또는 법 제85조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17의2]

지방해양수산청장 관할에서 제외되는 해역이용협의 등의
대상사업(제94조제4항11호 및12호 관련)

1. 처분기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
2. 「골재채취법」 제21조의2에 따른 바다골재채취예정지의 지정
3.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바다골재채취
4. 「골재채취법」 제34조에 따른 바다골재채취단지의 지정
5. 「전원개발촉진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중 해상풍력 발전소
또는 「전기사업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전기설비 중 해상풍력 발전소를
설치하는 행위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환경관리해역의 지정 등) ① (생 략)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역주민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접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공청회를 <u>개최하여</u>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생 략)	제9조(환경관리해역의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u>개최해</u> ----- -----.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환경관리해역에서의 시설 설치 제한) ①·② 삭제 ③·④ (생 략)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에 따라 환경관리해역에서 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제한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제한의 내용 및 기간을 <u>고시하여야</u> 한다.	제10조(환경관리해역에서의 시설 설치 제한) ③·④ (현행과 같음) ⑤ ----- ----- ----- ----- ----- ----- ----- <u>고시해야</u> -----.
제12조(오염물질 총량규제 항목 등) ① (생 략)	제12조(오염물질 총량규제 항목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항목에 대한 오염물질 총량규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총량관리에 관한 기본방침(이하 “총량관리 기본방침”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해당 오염물질 총량규제 실시해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1. 2. (생략)

3. 유역별, 행정구역별 및 오염원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4. 5. (생략)

6.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수립한 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총량관리시행계획의 변경 시 승인을 요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

③ 총량관리기본방침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총량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총량관리기본계획을 변경(제2항제6호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② -----

-----.

1. 2. (현행과 같음)

3. -----
-- 오염부하량(負荷量)의 할당(割當)

4. 5. (현행과 같음)

6. -----

-- 필요로 하지 않는 -----
--

③ -----

----- 총량관리기본계획
(이하 “총량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 4. (생략)

④ 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는 제3항에 따른 총량관리기본계획(이하 “총량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총량관리시행계획을 변경(제2항제6호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2. (생략)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총량관리기본계획과 제4항에 따른 총량관리시행계획(이하 “총량관리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필요한 연구 및 조사 등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해당 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⑥ (생략)

제13조(사업장별 오염부하량의 할

----.

1. ~ 4. (현행과 같음)

④ -----
----- 총량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총량관리시행계획(이하 “총량관리시행계획”이라 한다)-----

-----.

-----.

1.·2. (현행과 같음)

⑤ -----
----- 총량관리시행계획-----

반영해야 한다.

⑥ (현행과 같음)

제13조(사업장별 오염부하량의 할

당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인정하면

⑤ -----

----- 들어야 -----.

⑥

오염부하량 및 배출량을 측정하고, 그 측정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⑦ (생 략)

⑧ 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는 제4항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이나 지정된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경우 또는 제7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개선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른 조치명령의 방법 및 절차와 조치명령의 이행 확인 등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오염물질 총량관리 이행평가 등) ① 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는 총량관리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 이행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고 그 보고서(이하 “평가보고서”라 한다)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

----- 보존해야 -----.

⑦ (현행과 같음)

⑧ -----

----- 이행해야 -----.

⑨ -----

----- 관해서 -----
-----.

제14조(오염물질 총량관리 이행평가 등) ① -----

----- 제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관할 도지사를 거쳐 제출
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보고서를 검토한 후 오염물질 총량규제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에게 필요한 조치나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원의 증감을 파악할 수 있도록 오염물질 총량규제 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재정상의 지원 등) ① (생략)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2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총량

해야 ----. -----
----- 제출
해야 ----.

② -----

----- 인
정하면 -----

-----.
-----.

③ -----

----- 작성·
보관해야 ----.

제15조(재정상의 지원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관리기본계획 또는 총량관리시
행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아니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승인·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4. (생략)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행정
기관의 장이 제2항을 위반하거
나 오염물질 총량규제를 시행하
는 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가 제14조제2항에
따른 요구를 특별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면 재정지원의
중단이나 삭감,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7조(사업관리단의 구성) 법 제
16조제4항에 따른 사업관리단
은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1. ~ 3. (생략)

제24조(해역관리청의 해양환경개
선조치) ① (생략)

② 해역관리청은 공공폐수처리
시설, 분뇨 또는 축산폐수처리
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 않는
지방자치단체에게-----

----- 해서는 안
-----.

1. ~ 4. (현행과 같음)

③ -----

----- 않으면 -----

-----.

제17조(사업관리단의 구성) ----

----- 사람으로 ----.

1. ~ 3. (현행과 같음)

제24조(해역관리청의 해양환경개
선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4조의2(해양수산부장관의 해양환경개선조치) 법 제18조제2항 전단에서 “해양환경개선조치의 대상 해역 또는 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지사의 관할에 속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생략)
2. 재해 발생 등으로 인하여 해양환경개선조치를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제25조(폐기물해양배출업자에 대한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산정)
①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업자의 폐기물해양배출행위에 대한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 인정하면 -----

-----,

-----.

제24조의2(해양수산부장관의 해양환경개선조치) -----

-----.

1. (현행과 같음)
2. -----
----- 시행해야 -----

제25조(폐기물해양배출업자에 대한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산정)
① -----

----- 계산식 -----
-----.

② 제1항의 산식에서 폐기물해양배출량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처리실적서를 근거로 산정한다.

③ (생략)

제25조의2(선박 등에 대한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산정) ① (생략)

②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의 오염물질 해양배출행위에 대한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산식에서 오염물질의 해양배출량은 배출 전에 선적 또는 저장한 양에서 배출 후 이적 또는 잔존한 양(선박 연료유의 경우에는 선적한 양에서 선박의 운항 중 사용량을 포함한다)을 제외한 값으로 산정한다. 다만, 침몰·파손 등으로 잔존한 양을 알 수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오염물질의 종류와 기상조건을 감안하여 유체역학적 원리 등을 이용하여 산정

② ----- 계산식-----

-----.

③ (현행과 같음)

제25조의2(선박 등에 대한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 계산식-----
-----.

③ ----- 계산식-----
----- 선적
적(船積) 또는 -----
이적(移積) 또는 남은 -----

----- 남은 -----

----- 고려하여 -----

할 수 있다.

④ 법 제19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해역·수역 밖에서 배출된 오염 물질이 같은 해역·수역 안으로 유입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⑤ (생략)

제26조(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부과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기 또는 산정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1. 법 제19조제1항제1호: 매분기 별

2. (생략)

② 삭제

③·④ (생략)

제27조(부담금의 분할납부) ①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부담금을

-----.

④ -----

----- 않은 -----
--.

⑤ (현행과 같음)

제26조(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① -----

----- 해야 -----.

1. ----- 매 분기

2.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제27조(부담금의 분할납부) ① --

분할납부하려는 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부담금분할납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의 분할납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1.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2. (생략)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분할납부허가 통지를 받은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분할납부허가를 취소하고 분할납부와 관계되는 금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납부의무자에게 그 뜻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1. 분할납부금액을 지정된 기한

----- 제출해야 -----
-----.

② -----

-----.

-----.

1. 납부해야 -----

2. (현행과 같음)

③ -----

-----.

-----.

1. -----

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유로 그 분할납부기한까지 그 분할납부와 관계되는 금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8조(분할납부금액의 산정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할 금액은 월별로 균분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매회의 납부기한은 매월 마지막 날로 한다.

③ 분할납부의무자는 분할납부금액의 총액에서 바로 전회까지 납부한 분할납부금액 또는 분할납부금액의 합계액을 뺀 잔액을 기초로 하여 바로 전회의 분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각 회분의 분할납부기한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계산한 이자금액을 합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는 납부할 금액에 연 100분의 6의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 않은 -----

2. -----

----- 인정하는 -----
--

제28조(분할납부금액의 산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균등 배분하여 -----

-----.

③ -----

----- 납부해야 -----.

-----.

제29조(부담금의 조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부담금을 다시 산정하여 조정하되, 이미 납부한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으면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② (생략)

제30조(부담금의 조정신청) ① (생략)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이 있으면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그 신청인 또는 새로운 납부대상자에게 알려야 하고, 이미 납부한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으면 제29조제2항에 따라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은 부담금의 납부기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2조(가산금) ①·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의 분할

제29조(부담금의 조정) ① -----

----- 환급해야 -----.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30조(부담금의 조정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

----- 환급해야 -----

-----.

③ -----

-- 않는다.

제32조(가산금)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분할

납부에 관하여는 제27조(제2항 제1호는 제외한다) 및 제2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부담금”은 “가산금”으로, “부담금분할납부 신청서”는 “가산금분할납부신청서”로 본다.

제32조의2(독촉)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독촉하려는 경우 내야 할 부담금·가산금 및 그 납부기한·장소를 납부의무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제33조(부담금 관련사업) ① (생략)

② 법 제21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해양오염 저감대책의 시행 및 지원에 관한 사업
2. (생략)

제37조(조사·측정활동) ① 해역관리청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오염물질의 종류별·오염

납부-----

-----.

-----.

제32조의2(독촉) -----

----- 알려야 -----
--.

제33조(부담금 관련사업)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저감(低減)대책-----

2. (현행과 같음)

제37조(조사·측정활동) ① ----

원별 배출량 또는 유입량을 조사·측정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해역관리청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조사·측정활동을 매년 실시하고, 시·도지사가 해역관리청인 경우에는 그 결과를 다음 해 2월 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3조(연료유의 품질기준) 법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료유의 품질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품질기준을 말한다.

1. 석유를 정제하는 방법에 따라 제조된 연료유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 것

가. (생략)

나. 무기산이 포함되지 아니 할 것

다.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첨가제 또는 화학폐기물이 포함되지 아니 할 것

2. 제1호 외의 방법에 따라 제조

----- 조
사·측정해야 ----.

② (현행과 같음)

③ -----

----- 보고해야 -----.

제43조(연료유의 품질기준) ----

-----.

1. -----

--

가. (현행과 같음)

나. ----- 않을 ----

다. -----

----- 않을 ----

2. -----

된 연료유의 경우 다음 각 목
의 요건을 모두 갖추 것

가. 선박의 기관을 작동할 때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이 법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질소산
화물의 배출허용기준을 초
과하지 아니할 것

나. 혼합되는 원물질에 무기
산이 포함되지 아니할 것

다. 선박의 안전을 저해하거
나 기계의 성능에 나쁜 영
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라. 인체에 해롭지 아니할 것

마. 대기오염을 가중시키지
아니할 것

제45조(방제대책본부의 구성·운
영 등) ① 법 제62조제3항에 따
른 방제대책본부의 장(이하 이
조에서 “본부장”이라 한다)은
해양경찰청장이 되고, 그 구성
원은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과
관계 기관의 장이 파견한 자로
구성한다.

② 본부장은 관계 기관의 장에
게 방제대책본부에 근무할 자의

가. -----

---- 않을 ----

나. -----

----- 않을 ----

다. ---- 안전에 지장을 주거

----- 않을 ----

라. ----- 않을 ----

마. -----

않을 ----

제45조(방제대책본부의 구성·운
영 등) ① -----

----- 사람

으로 --.

② -----

----- 사람

파견과 방제작업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 ⑥ (생략)

제48조(오염물질이 배출된 경우의 방제조치) ①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방제조치는 다음 각 호의 조치로서 오염물질의 배출 방지와 배출된 오염물질의 확산방지 및 제거를 위한 응급조치를 한 후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유효적절한 조치여야 한다.

1. (생략)

2. 선박 또는 시설의 손상부위의 긴급수리, 선체의 예인·인양조치 등 오염물질의 배출 방지조치

3. ~ 7. (생략)

② (생략)

제49조(방제조치 명령) 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방제조치 명령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 3. (생략)

의 -----

---. -----

-----.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48조(오염물질이 배출된 경우의 방제조치) ① -----

-----.

1. (현행과 같음)

2. -----
----- 예인(曳引)·인양(引揚)조치 -----

3. ~ 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49조(방제조치 명령) -----

----- 포함해야 -----.

1. ~ 3. (현행과 같음)

제50조(비용부담의 범위 등) ①
(생략)

② 해양경찰청장, 법 제68조제2
항 각 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의 장 또는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8조제4항 본문에 따라 제1항
의 비용을 선박 또는 해양시설
의 소유자에게 부담시키려는 경
우에는 그 비용의 산출기초를
명확히 하여 방제 의무자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

제51조(방제선등의 배치 등) ① ·

② (생략)

③ 법 제67조제4항 후단에 따라
방제선등의 배치를 위탁받은 공
단이 방제조치 또는 배출방지조
치를 하는 경우 방제 의무자가
비용부담을 하여야 한다.

제52조(행정기관의 방제조치와 비
용부담 등) ① 해양경찰청장, 시
장·군수·구청장 또는 제4항
에 따른 시설을 관리하는 행정
기관의 장(이하 “방제조치기관”
이라 한다)은 방제 의무자가 분
명하지 아니한 오염물질이 배출
된 경우 우선하여 방제조치를

제50조(비용부담의 범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통
보해야 ----.

제51조(방제선등의 배치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해야 -----.

제52조(행정기관의 방제조치와 비
용부담 등) ① -----

----- 않은 -----

하여야 한다.

② 방제조치기관은 제1항에 따라 우선 방제조치를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단 이사장에게 방제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 이사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방제의무자가 분명하지 아니한 오염물질이 배출된 경우

2.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방제의무자의 방제조치만으로는 곤란하거나 긴급방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공단이 방제조치를 한 경우에는 공단 이사장은 그 소요 비용을 방제조치기관에 청구할 수 있으며, 방제조치기관은 이를 공단 이사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54조(방제분담금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 배치의무자가 법 제69조제3항에 따라 공단에 납부하여야 하는 방제분담금의 부과기

해야 ----.

② -----

-----.

1. -----
----- 않은 -----

2. -----

----- 인정하는 -----

③ -----

지급해야 ----.

④ (현행과 같음)

제54조(방제분담금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 -----
----- 납부해야 -----

준 및 절차는 별표 9와 같다.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부과하였거나 납부된 방제분담금을 다시 산정하여 조정하거나 환급할 수 있다.

1. 2. (생략)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방제분담금을 조정하거나 환급할 경우에는 그 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환급 시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문서로 방제분담금 납부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방제분담금의 납부통지(제3항에 따른 통지를 포함한다)를 받은 자는 납부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방제분담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신청은 방제분담금의 납부기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⑤ 공단은 제4항에 따른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하며, 이미 납부한 금액

-----.

② -----
----- 부
과했거-----

-----.

1. 2. (현행과 같음)

③ -----

----- 통지해야
-----.

④ -----

----- 않는다.

⑤ -----

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⑥·⑦ (생략)

제54조의3(독촉) 공단은 법 제69조의2제2항에 따라 독촉하려는 경우 내야 할 방제분담금·가산금 및 그 납부기한·장소를 납부의무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제54조의4(방제분담금 산정 등을 위한 자료제출) ① (생략)

② 공단은 법 제69조의3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제출기한의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방제분담금의 납부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 4. (생략)

제55조(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

① ~ ③ (생략)

④ 해양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을 등록한 자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 환급해야 -----.

⑥·⑦ (현행과 같음)

제54조의3(독촉) -----

----- 알려야 -----
--.

제54조의4(방제분담금 산정 등을 위한 자료제출) ① (현행과 같음)

② -----

----- 통보해야 -----
-----.

1. ~ 4. (현행과 같음)

제55조(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60조의2(침몰선박에 대한 위해도 저감대책의 실행 비용 등)

① (생략)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3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침몰선박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침몰선박을 공매하여 법 제83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조치에 드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침몰선박의 가액이 공매에 드는 비용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침몰선박을 공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양수산부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본문에 따라 공매를 하여 취득한 금액에서 법 제83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조치에 든 비용과 공매에 든 비용을 제외하고 남

----- 발급해야 -----.

제60조의2(침몰선박에 대한 위해도 저감대책의 실행 비용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가액(價額)-----

그렇지 않다.

③ -----

----- 공고해야 -----.

1. ~ 3. (현행과 같음)

④ -----

③ (생 략)

제64조(해역이용영향평가서 등의
작성방법 등) ① (생 략)

②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해역
이용영향평가대행자(이하 “평
가대행자”라 한다)는 도급계약
및 신의에 따라 성실히 평가서
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평가대행자는 전년도의 해역
이용영향평가대행실적을 해양
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제65조(평가대행자의 등록신청
등) ①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평가대행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해역이용영향평가 대행자 등록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
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삭 제

2. · 3.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
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
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
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

③ (현행과 같음)

제64조(해역이용영향평가서 등의
작성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작성해야 ----.

③ -----

----- 보고해야 -
-----.

제65조(평가대행자의 등록신청
등) ①-----

----- 제출해야 -----.

2. · 3. (현행과 같음)

② -----

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
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
호 및 제3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서류의 사
본을 각각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③ (생 략)

제66조(평가대행비용의 산정기준)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5조에 따
라 등록한 평가대행자의 업무대
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67조(의견통보 등) ① ~ ③ (생
략)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 처분기관에 해역이용협의등
의 서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생 략)

2. 보완이 되지 아니하면 그 사
업에 대한 해역이용협의등의
의견을 제시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사항이 누락·결여되
어 있는 경우

3. 환경현황조사, 영향 예측·분

----- 확인해
야 -----.

않는

----- 해야 ---
---.

1. ~ 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66조(평가대행비용의 산정기준)

----- 고시해야 -----.

제67조(의견통보 등) ① ~ ③ (현
행과 같음)

④ -----

1. (현행과 같음)

2. ----- 않으면 -----

3. -----

석 및 저감대책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

4.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내용이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해역이용영향평가서로
한정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보완의 요구는 원칙적으로
1회로 한정한다. 다만, 추가적
보완이 없이는 해역이용협의등
의 요청에 대한 의견을 결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8조(이의신청) ① 법 제92조제
1항 전단에 따라 통보받은 의견
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된 이의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
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② (생략)

제69조(사후관리) ① (생략)

② 처분기관은 해역이용사업자
· 평가대상사업자(이하 “해역
이용사업자등”이라 한다)가 해

않은 -----

4. -----
----- 않은 -----

⑤ -----

-----.

그렇지 않다.

제68조(이의신청) ① -----

----- 제출해야 -----.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69조(사후관리) ① (현행과 같
음)

② -----

역이용협의등의 내용 및 해역이
용협의등에 대한 의견을 이행하
지 아니하면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③ 처분기관은 해역이용사업자
등이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2차
조치명령을 하고 2차 조치명령
시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
는 조치명령 이행 시까지 해당
사업에 대한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④ · ⑤ (생 략)

제70조(적용 대상) ① (생 략)

② 법 제9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2. (생 략)

3. 사업규모가 증가하지 아니하
고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른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경
미한 경우로서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하는 경우

제71조(해양환경영향조사 대상사

-- 않으면 -----
----- 명해야 -----.

③ -----

----- 않을 경우에는 -----

----- 않을 때-----

----- 명해야 ---
---.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70조(적용 대상) ① (현행과 같
음)

② -----

-----.

1. · 2. (현행과 같음)

3. ----- 않고 --

제71조(해양환경영향조사 대상사

업 등) ① 해역이용사업자등이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 해양환 경영향을 <u>조사하여야</u> 하는 대상 사업별 조사기간 및 조사주기는 별표 17과 같다. ②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 해양 환경영향조사를 하여야 하는 항 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환경기준이 <u>정하여진</u> 항 목 2. 해양환경기준이 <u>정하여지지 아니한</u> 항목으로서 법 제91조 제1항에 따른 해역이용협의서 또는 해역이용영향평가서의 의견 통보 시 해양수산부장관 이 제시한 항목 제73조(이사회 운영 등) ① 법 제1 02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 2. (생 략) 3. 법 제104조에 따른 출자 · 출 연 및 <u>차입</u>에 관한 사항 4. ~ 8. (생 략) ② (생 략) 제74조(출자) 공단은 법 제104조	업 등) ① ----- ----- ----- <u>조사해야</u> ----- ----- -----. ② ----- ----- -----. 1. ----- <u>정해진</u> ----- -- 2. ----- <u>정해지지 않 은</u> ----- ----- ----- ----- ----- 제73조(이사회 운영 등) ① ----- ----- ----- -----. 1. · 2. (현행과 같음) 3. ----- --- <u>차입(借入)</u>----- 4. ~ 8.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74조(출자) -----
---	--

제1항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하
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된 계획서를 해양수산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4. (생략)

제75조(차입) 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공단이 자금차입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자금차입승
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적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1. ~ 5. (생략)

제76조(채권의 형식) 법 제106조
제1항에 따라 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은 무기명식으로 한다. 다
만, 응모자 또는 소지인의 청구
가 있으면 기명식으로 할 수 있
다.

제77조(채권의 발행방법)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매출의 방법으
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매출기간과 제78조제2항제1호
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78조(채권의 응모 등) ① 채권

-- 제출해야 ----.

1. ~ 4. (현행과 같음)

제75조(차입) -----

----- 제
출해야 ----.

1. ~ 5. (현행과 같음)

제76조(채권의 형식) -----

----- 소지인(所持人)

--.

제77조(채권의 발행방법) ① (현
행과 같음)

② -----

공고해야 ----.

제78조(채권의 응모 등) ① -----

의 모집에 응하려는 자는 채권
청약서 2통에 그 인수하려는 채
권의 수, 인수가액 및 청약자의
주소를 적고 이에 기명날인하
여 한다. 다만, 채권의 최저가액
을 정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응모가액을 적어야 한다.

② 채권청약서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6. (생략)

7. 상환되지 아니한 채권이 있
는 경우에는 그 총액

8. (생략)

제79조(총액인수의 방법) 제78조
는 계약에 의하여 채권의 총액
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채권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채권의 일부를 인
수하는 경우 그 인수분에 대하
여도 또한 같다.

제81조(채권인수가액의 납입 등)

① 공단은 채권의 응모가 완료
되면 지체 없이 응모자가 인수
한 채권금액의 전액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 기명날인해야
-----.

② -----
-----.

1. ~ 6. (현행과 같음)

7. ----- 않은 -----

8. (현행과 같음)

제79조(총액인수의 방법) -----

않는다. -----

----- 대해
서도 -----.

제81조(채권인수가액의 납입 등)

① -----

해야 -----.

②·③ (현행과 같음)

제82조(채권의 기재사항) 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공단 이사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 4. (생략)

제84조(이권흡결의 경우) ① 이권(利權) 있는 무기명식의 채권을 상환하는 경우 이권이 흡결된 때에는 그 이권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액으로부터 공제한다.

② (생략)

제85조(채권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① 공단은 채권을 발행하기 전의 그 응모자 또는 권리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를 채권청약서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이 따로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무기명식 채권의 소지인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를 공고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그 주소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공단은 기명식 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를 채

제82조(채권의 기재사항) -----

----- 기명날인해야
-----.

1. ~ 4. (현행과 같음)

제84조(이권흡결의 경우) ① -----

----- 흡결(欠缺)된 -----
-----.

② (현행과 같음)

제85조(채권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① -----

----- 최고(催告) -----
----- 해야 -----
-----.

② -----

-----.

③ -----

----- 그
렇지 않을 -----.

권원부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이 따로 주소
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
로 하여야 한다.

제86조(사업운영계획 및 예산)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안에는 예
산총칙·추정대차대조표 및 추
정손익계산서를 포함하여야 하
며, 그 내용을 명확히 하는 데에
필요한 부속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
인을 받은 사업운영계획과 예산
을 변경하려면 변경내용과 그
사유를 적은 서류를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7조(결산서의 제출) 공단이 법
제107조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
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매 회계연
도의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 4. (생략)

제88조(협정의 체결) ① 법 제112
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한국
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선급법

----- 해야 ----
----. -----

-- 해야 ----.

제86조(사업운영계획 및 예산) ①
(현행과 같음)

② ----- 예
산총칙·추정재무상태표 ----

----- 첨부해야 --
----.

③ -----

----- 제출해야 -----.

제87조(결산서의 제출) -----

----- 첨부해야 -----.

1. ~ 4. (현행과 같음)

제88조(협정의 체결) ① -----

인이 협정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협정체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
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협정을
체결한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
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89조(출입검사·보고 등) ① 법
제115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
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선박에 대한
출입검사업무를 하게 할 수 있
다.

1. (생략)

2. 대항기관으로부터 보고받은
자료의 검토결과 선박 또는
선박 관련 사업장·사무소에
출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
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선박에
대한 출입검사·보고는 각 선박
에 대하여 연 1회 시행할 수 있

신청해야 ----.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 고시해야 ----.

제89조(출입검사·보고 등) ① --

--.

1. (현행과 같음)

2. ----

----- 인정하
는 ---

② ----

다. 다만, 선박사고 등 특별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③ 법 제115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양시설 등에 대한 출입검사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1. (생략)

2. 법 제33조에 따라 신고된 해양시설이 잔류성오염물질을 환경관리해역 안에서 그 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법 제45조에 따라 선박연료공급업자가 선박에 연료유를 공급하는 과정에서의 적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4. (생략)

5. 6. 삭제

7. 법 제110조제3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형식승인대상설비를 제작·제조 또는 수입하는 과정에서의 적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④·⑤ (생략)

---. -----
----- 그렇지 않다.

③ -----

-----.

1. (현행과 같음)

2. -----

----- 판단하는 --

3. -----

----- 과정이 적법한지 ---

4. (현행과 같음)

7. -----

----- 과정이 적법한지 ---

④·⑤ (현행과 같음)

제90조(해양환경감시원)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16조제1항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해양환경감시원으로 임명한다.

1. 해양공학기사·해양자원개발기사·해양환경기사·해양조사산업기사·조선산업기사·수질환경산업기사·대기환경산업기사·폐기물처리산업기사·화공산업기사·위험물산업기사 이상이거나 항해사·기관사 또는 운항사 각 3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2. 해양환경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무역항 단속공무원으로 임명된 자
4. 「선박안전법」 제76조에 따라 선박검사관으로 임명된 자

② 해양환경감시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90조(해양환경감시원) ① -----

----- 사람
을 -----.

1. -----

----- 취득한 사람
2. -----
----- 사람
3. -----

----- 사람
4. -----
----- 사
람

② -----
-----.

1. (생략) 2. 해양경찰청장 소속 해양환경 감시원 가. ~ 다. (생략) 라. 해양시설에서의 방제선등 의 <u>배치·설치 및 자재·</u> <u>약제의 비치</u> 상황에 관한 검사 마. (생략) 제91조의2(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119조의2제1항에 따른 신 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 다)을 받으려는 <u>자는</u> 해양수산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 양수산부장관, 해양경찰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해양수 산부장관등”이라 한다)에게 포 상금 지급을 <u>신청하여야</u> 한다. ② ~ ④ (생략) 제94조(권한의 위임) ① 삭제 ② 법 제123조제1항에 따라 해 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해양경찰서 장에게 위임한다. 1. ~ 7. 삭제	1. (현행과 같음) 2. -----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 - 배치·설치 및 자재·약 제----- ---- 마. (현행과 같음) 제91조의2(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 ----- ----- <u>사람은</u> ----- ----- ----- ----- ----- ----- <u>신청해야</u>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94조(권한의 위임) ② ----- ----- ----- -----.
--	--

8. 법 제115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선박의 출입검사와 보고 등의 명령가. (생략)

나. 국제항해에 운항하는 대한민국선박으로서 제94조제4항제19호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출입검사를 하지 아니한 선박

9. (생략)

③ (생략)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1. ~ 7. (생략)

8. ~ 10의2. 삭제

11.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해역이용협의(처분기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는 제외한다)

12.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처분기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는 제외한다)

13. ~ 25. (생략)

8. -----

가. (현행과 같음)

나. -----

----- 않은 -----

9.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

-----.

1. ~ 7. (현행과 같음)

11. -----

-----(별표 17의2에 규정

된 대상사업은 -----

12. -----

-----(별표 17의2에

규정된 대상사업은 -----

13. ~ 25.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며, 시·도지사는 그 권한의 일부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u>다시</u> 위임할 수 있다. 1. ~ 4. (생 략) 제95조(업무의 위탁) ①·② (생 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u>포함하여야</u> 한다. 1. ~ 6. (생 략) 제96조(자료제출) 해양경찰서장,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23조제1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그에 관한 자료를 <u>제출하여야</u> 한다.	⑤ (현행과 같음) ⑥ ----- ----- ----- ----- ----- ----- 다시 위임 ----- --. 1. ~ 4. (현행과 같음) 제95조(업무의 위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포함해야 ----- --. 1. ~ 6. (현행과 같음) 제96조(자료제출) ----- ----- ----- ----- ----- ----- ----- 제출해야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	
연 락 처	(044) 200 - 5861